

Jisung Horizon Newsletter

November 2009 Vol.2. No.11

01 법률칼럼

- 2009 IPBA Annual Conference 참석 기 (길영민 변호사)

04 열려라 중국

- 개정 보험법 시행과 관련하여 (김이태 변호사)

07 주목! 이 판례

-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위법성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11 최신법령

- 일부 공익채권의 우선적 지위 부여 등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경영 관여의 요건 신설 등
- 비금융주력자의 경영 관여의 요건 신설 등

13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 IFLR1000誌 2010년 기업자문 전분야에서 우수 평가 획득!!!

18 업무동향

- 지평지성, 라오스 증권거래소 설립위원회(SMEC) 주최 기업공개 컨퍼런스 참가
- 지평지성, 엠넷미디어와 CJ를 대리하여 300억원 규모의 CB 및 BW 발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 지평지성, 우리투자증권 주관의 한전자회사 KPS의 주식 매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중
- 지평지성, 베트남에 최초로 설립된 정유공장의 운영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SK에너지(주)에 법률자문 제공

22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리걸타임즈 집계, 가장 호감가는 한국 로펌 및 로펌의 브랜드 인지도에서 우수 로펌으로 선정
-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 가을 체육대회 개최
- 이호원 대표변호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강연
- 강성 대표변호사, LAW 2009 Annual General Meeting 참석
- 홍성준 변호사, 『관리인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외
- 임성택 변호사,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과정』 강의
- 이은우 변호사, 『ITU Telecom World 2009』 참석
- 배성진, 강경국 변호사, 『사법연수원 특수불법행위법』 강좌에서 '제조물책임법' 강의
- 이소영 변호사, 『제2회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 참석 및 발표

30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 이병래 변호사

31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 배기완 변호사
- 배동희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2009 IPBA Annual Conference 참석 기



길영민 변호사

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제19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그곳에서 이루어진 토의들의 주요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

당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할 때여서 그런지 참석자들이 Banking, Finance & Securities Committee에서 주최한 세미나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저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동 committee에서는 The Regulation of Hedge Funds in Various Jurisdictions, Current Trends in Islamic Finance, Current Issues in Financing of Infrastructure, Lessons and Fallout from the Global Credit Crisis 등의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session을 가졌습니다.

Hedge Fund에 관한 session에서는 미국, 유럽연합(특히 룩셈부르크),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인도의 규제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1월경 헤지펀드 투명성 법안(The Hedge Fund Transparency Act of 2009), 헤지펀드 자문업자 등록법안(The Hedge Fund Adviser Registration Act of 2009) 등이 의회에 제출되는 등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최근에 대폭 강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4월 29일 대체투자 매니저들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모든 펀드매니저들이 자국 내 감독기관들로부터 인가를 얻어야 하고, 펀드의 활동계획, 운용체계, 자산의 평가 및 보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주로 공매도나 파생상품 등의 거래규제 및 헤지펀드 평가, 신용평가기관 감독 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홍콩,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헤지펀드에 대한 설명서 배포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인도의 경우 헤지펀드가 해외기관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그 펀드는 반드시 설정지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는 법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헤지펀드임을 명시하면 신청 접수가 유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중 헤지펀드 관련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각국 정부의 헤지펀드 규제 강화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Current Trends in Islamic Finance Session에도 참석하였는데, 이미 국내 증권사들이 이슬람 금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예전에 수쿱을 발행하는 구조 관련 업무에 참석했던 지라 이슬람 금융이 전혀 생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는 최근 이슬람부동산투자신탁(Islamic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에는 동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방법, 감독기관의 규제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두바이, 인도네시아 변호사들이 이슬람채권의 발행구조, 이슬람금융의 특징 등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Infrastructure Financing session에서는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금융의 구조와 관련 법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투자회사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 각 나라별로 갖는 특징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Lessons and Fallout from the Global Credit Crisis Session은 법률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뤘다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각 사건들을 법적 관점에서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 온 변호사들이 자국의 금융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이 평이했고, 이해하기도 수월했습니다.

각 Session 별로 약 3시간 정도의 세미나가 있었고 상당히 흥미있고 열띤 분위기에 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각 로펌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자국의 법제, 경험을 소개하고 다른 나라 변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Session 사이의 coffee break나 저녁식사 이후에 있는 Gala meeting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개최국인 필리핀에서도 아로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의가 변호사로 일하고 나서 처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음으로 참석한 국제회의였기 때문에 매우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했고, 다양한 나라의 변호사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있는 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하고 싶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열려라 중국)

개정 보험법 시행과 관련하여



김이태 변호사

2009년 2월 28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험법은 1995년에 제정되고, 2002년 중국의 WTO에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 개방을 위하여 개정된 후, 올해 다시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 2차 개정 과정에서 기존 보험법에 87개 조문을 추가하고 19개 조문을 삭제하며 126개 조문을 수정하는 등 기존 보험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으며, 기존 보험법에서 그대로 유지된 조문은 13개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험사건 분쟁의 주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차 개정 때에는 수정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부분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1. 보험법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1)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

보험법 개정의 가장 주된 취지는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이익 보호입니다. 개정 보험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제권의 요건 및 소멸시효, 보험약관의 내용 제한 등), 보험회사의 면책(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된 면책요건 등), 소송시효(보험금지급청구권의 시효기산일 등) 등과 관련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2)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개정 보험법에서는 보험회사 및 그 직원이 보험업무를 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도 구체화하였고, 보험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한 감독 조치를 새로 추가하는 등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및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지급능력이 부족한 보험회사를 중점감독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자본금 증가, 재보험 가입, 업무범위 제한, 주주에 대한 배당 제한, 고정자산 매입 규모 제한, 자산 운용 방식 및 비율 제한, 이사와 감사 및 고급관리직의 연봉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험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험회사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그 임직원 등의 은행계좌 조회, 은닉 또는 훼손 가능한 서류의 봉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의 자금운용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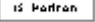
이번에 개정된 보험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보험회사의 자금운용 대상을 유가증권, 증권투자기금(펀드) 외에도 기존에는 금지했던 부동산투자까지 확대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상업용 부동산이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보험회사들의 주요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업계에서는 개정 보험법 시행에 따른 중국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부동산자문기구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는 중국 보험회사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보험회사는 국유기업과 함께 중국 부동산시장의 주요 투자기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최소 2,000억 위안(약 35조원) 규모의 막대한 보험회사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치

한편,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개정 보험법의 시행을 위하여 2009년 9월 27일과 28

일에 '보험회사관리규정', '보험회사중개업무불법행위처벌방법', '보험전문대행기관감독규정', '보험중개기관감독규정', '보험공가기관감독규정'(공가기관이라 함은 보험목적물 또는 보험사고의 평가, 감정, 손해평가계산 등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등을 발표하여 개정 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들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2009년 9월 21일 기존에 발생한 사건과 개정 보험법의 적용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사법해석을 발표했습니다.

3. 전망

개정 보험법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금운용 대상의 확대가 중국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주목! 이 판례)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위법성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1. 들어가며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견해를 달리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건축허가신청이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 3월경 안양시 만안구청장에게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검토 대상지역이므로, 신청지에 건축이 된 후 향후 주변 택지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일조권, 조망권 등 이행상충의 직접 피해 등이 우려되고 분재의 소지가 다분하여 신청지 주변 주택택지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떤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아직 입안되지도 않은 도시계획을 언급하면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피해나 분쟁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심의 판단

1심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등)"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면서, "이 사건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불량주택개발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관리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 자체에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이 고시된 이상 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준공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 일대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 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한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신청이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안양시장은 2008년 7월경 안양시 고시로 이 사건 신청지 등에 대하여 '2020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행위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대상지역 건축물의 건축(신·증축),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고시일로부터 1년간 제한한다."

위와 같은 고시와 위 국토계획법 제63조가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

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맞바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5. 검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로 보는 종래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는 건축허가 속에 여타의 처분들이 의제되지 않는 시절에 유지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가 위험방지의 건축허가 요건만을 심사하던 시절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는 한, 행정청이 반드시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속에 무수히 많은 재량행위가 의제되고 있는 오늘날 현행법 체계에서는 더 이상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법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름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에서 근거한 고시의 내용에서 행위제한의 시점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신청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신청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까지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최신법령)

1. 일부 공익채권의 우선적 지위 부여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9804호, 2009. 10. 21. 시행)

1. 종전에는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법 제179조 제2항을 신설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금의 차입이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 전의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3. 법 제180조 제7항을 개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9804호, 2009. 10. 21. 시행)

2.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경영 관여의 요건 신설 등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76호, 2009. 10. 10. 시행)

1.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경영 관여의 요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3조

의 3,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개정 법률에서는 기금 등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7조를 신설하여 의결권의 행사기준,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해 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4.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으로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이며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5천억 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76호, 2009. 10. 10. 시행)

3. 비금융주력자의 경영 관여의 요건 신설 등

: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75호, 2009. 10. 10. 시행)

1.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의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은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비금융주력자의 경영 관여의 요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조의 6을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10조를 신설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금융기관 주식 보유의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이해 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1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개정 취지 및 내용은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3. 다운로드 :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75호, 2009. 10. 10. 시행)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 IFLR1000誌 2010년 기업자문 전분야에서 우수 평가 획득!!!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세계적 법률잡지 IFLR1000誌의 2010년판 평가에서 기업자문 4개분야 전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IFLR1000誌의 2010년판 기업자문 분야는 4개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으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및 '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Banking and project finance)', '구조조정 및 파산(Restructuring and insolvency)'에서 2위를 비롯하여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IFLR1000誌는 지평지성 소개에서 '120인 규모의 지평지성은 빠르게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며 더 오래되고 안정된 다른 법무법인들과 순위를 경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IFLR1000誌는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지가 발행하는 월간지로서 금융관련 법률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들과 국제금융계 인사들로부터 법률실무와 관련해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각 국가별 우수 로펌을 부문에 따라 선정하고 있는 IFLR 1000誌의 평가는 전 세계 각국에서 우수 로펌 선택에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 [Jisung Horizon - Asia-Pacific - IFLR1000 - Financial Law Firm Rankings](#)
- [IFLR1000 - The guide to the world's leading financial law firms](#)

■ IFLR1000誌 2010년판이 선정한 각 부문별 3위 이내 국내 로펌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November 2009 Vol. 2. No. 11.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구분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Banking and project finance)	구조조정 및 파산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자본시장 (Capital markets)
1위	태평양 · 김앤장 · 광장 · 세종 · 울촌	태평양·김앤장·광장	태평양 · 김앤장 · 세종	김앤장 · 세종
2위	지평지성 · 화우	지평지성 세종 · 울촌	지평지성 · 양현 · 광장 · 화우 · 울촌	태평양 · 광장 · 울 촌
3위	총정 · 양현	총정 · 양현 · KCL · 세화 · 화우	KCL	지평지성 에버그린 · 양현 · 화우 · KCL

■ IFLR1000誌 2010 Edition - '법무법인 지평지성(Jisung Horizon)' 소개

법무법인 지평지성	Jisung Horizon Law Group
<p>가장 새로운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 지성과 법무법인 지평은 2008.9. 합병을 완료하였다. 비록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120인 규모의 지평지성은 빠르게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며 더 오래되고 안정된 다른 법무법인들과 순위를 경쟁하고 있다. 고객인 한 은행가의 말에 의하면 "지평지성의 변호사들은 매우 박식하고 프로페셔널하며 관계 당국에 중요한 인맥들을 보유하고 있다."</p> <p>지평지성은 많은 파트너와 어쏘 변호사들을 정부, 기업, 그리고 타 법무법인에서 모아 경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류 팀들을 만들고 있다. M&A 리딩 파트너인</p>	<p>The newest firm on the block, Jisung Law Group and Horizon Law Offices completed their merger into Jisung Horizon in September 2008. Despite its youth, the combined firm of 120 lawyers has made a swift impression on the market, climbing up the ranks to compete against its much older and more established competitors. "Jisung Horizon's lawyers are very knowledgeable, completely professional, and they have very valuable contacts with the regulators," comments a banker client of the firm.</p>

강성 변호사에 대한 고객의 칭찬이다: “고객의 필요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고 비즈니스적인 사고가 매우 발달하였다. 어떻게든 일이 되도록 만든다.”

자본시장 전문가인 강율리 변호사에 대한 다른 고객의 칭찬이다: “고객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정시에, 정확하고, 실용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고객의 복잡한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관계법령에 해박하며 딜의 구조, 특히 ABS와 타 증권 관련 딜 구조를 수립 하는 데에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평지성은 좋은 로펌입니다” 한 사내변호사의 말이다. “비용은 합리적이고, 변호사들은 경험 있고 프로페셔널하며, 다른 동료들도 그 로펌에 대하여 좋은 말들을 합니다.”

저명한 도산 전문 판사인 홍성준 변호사의 영입으로 지평지성의 도산팀은 강화되었다. 이 영입에 관한 한 경쟁 로펌 변호사의 말이다: “홍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도산전문가 중 하나이며 이제 모두가 지평지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현대종합상사 매각에 주채권은행의 법률자문사로 선정된 것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현대카드 주식 매각을 자문한 것도 지평지성의 업적이다. 이 두 딜은 현재까지 있었던 2009년 딜 중 가장 규모가 큰 딜들이다.

도산과 관련하여서 홍변호사는 최소 4개

Jisung Horizon has been building and crafting its top-notch team of experienced practitioners, poaching numerous partners and associates from government positions, corporates and rival firms. One client has praise for leading M&A partner Seong Kang: "He is completely focused on client's needs and is very commercially-oriented. He finds a way to get things done, no matter what." Another client lauds capital markets specialist Yully Kang: "She ha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lient's needs and goals, and provides accurate, timely and practical advice and legal services that are tailored to the complex legal requirements of the client. She ha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laws and extensive experience in devising transaction structur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ABS [asset-backed securities] and other securities."

"Jisung Horizon is a good firm," says an in-house counsel client. "Their cost structure is reasonable, the lawyers are experienced and professional, and I've heard other good things about them from colleagues."

The firm is proud of the recent bolstering of its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practice by the hiring of renowned

의 대규모 도산 딜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대리하였다. 예를 들어 도산팀은 1억 1백만불 규모의 코스모텍건에 채무자를 대리하고 있으며 2천5백만불 규모의 서울보증보험건에 채권자를 대리하여 참여하고 있다. M&A 분야에서는 미래에셋을 대리하여 C&M의 주식을 인수한 20억불 규모의 딜을 수행 하였다.

지평지성의 자본시장 팀도 유명세를 더하고 있으며 팀 소속 변호사들은 2009년 2월부터 시행 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실행과 관련한 태스크포스에 참여 하였다. 또 지평지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외부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 시키려는 외국 회사들을 자문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팀의 강점은 자산유동화이고 산업은행의 400억엔(4억2천3백만불) 규모의 해외 ABS 발행과 삼성카드 관련 2억2천만불 규모의 해외 증권발행과 관련한 씨티은행 자문 등을 수행 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과정에 태스크포스로 참여한 경험을 살려, 지평지성의 변호사들은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조항의 정확하고 실용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어느 고객의 말이다. “자본시장 관련 체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지평지성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업무에서 금융기관을 돕고 자문합니다.”

bankruptcy judge Sung-Jun Hong. Says one rival of this significant addition: "Everybody must now pay attention to Jisung Horizon as Mr Hong is one of the country's top reorganisation specialists." Other achievements were the firm's selection, after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to serve as counsel to the primary creditor banks in relation to the sale of Hyundai Corporation, and its role advising Kamco on its sale of shares in Hyundai Card. These are two of the largest deals so far for 2009.

On the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front, Hong is leading teams for both the debtors and creditors in at least four highlight restructurings. For example, the team is advising the debtor in the \$101 million Cosmotech case and it is acting for the creditor in the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25 million reorganisation. One other M&A coup for the team was representing Mirae Asset Management in the acquisition of C&M Shares valued at \$2 billion.

Jisung Horizon's capital markets prowess is gaining recognition with its lawyers participating in the task force team for the February 2009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Additionally, the firm serves as outside general counsel to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The team has seen an uptick in its work advising foreign companies seeking to do IPOs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The team's forte is securitisation, advising Industrial Bank of Korea in relation to its ¥ 40 billion (\$423 million) offshore asset-backed securitisation and acting for Citibank in relation to its \$220 million offshore securitisation for Samsung Card. "Utilising their experience participating in the task force fo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legislation, they provide accurate and practical legal advic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regulations relevant in developing new financial products and protecting investors," says a client. "With their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regulatory framework, they assist and advise financial institution clients on a wide variety of capital markets transactions."

IS 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라오스 증권거래소 설립위원회(SMEC) 주최 기업공개 컨퍼런스 참가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IBK투자증권과 함께 지난 10월 1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증권거래소 설립위원회(SMEC)가 주최하는 기업공개(IPO)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2년 내 IPO가 가능한 BCEL(은행), ETL(이동통신사), BEER LAO(맥주회사) 등 주요 라오스 기업들과 민영화를 앞둔 라오스 공기업 등 총 25개사가 참가하였습니다.

IBK투자증권은 국내외 증권사 중 유일하게 컨퍼런스에 참여해 IPO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일대 일 IPO 관련 컨설팅 실시하였으며,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라오스 로펌인 LLC와 협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한국경제 - BK투자증권 라오스 IPO 시장 진출
- 파이낸셜뉴스 - IBK투자증권, 라오스 IPO 컨퍼런스 참여
- 아주경제 - IBK투자증권 라오스 IPO 컨퍼런스 단독 참여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is partner

(업무동향)

지평지성, 엠넷미디어와 CJ를 대리하여 300억원 규모의 CB 및 BW 발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뮤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엠넷미디어는 CJ와 스탠다드차타드프라이빗에쿼티(SCPE)를 대상으로 300억원규모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CB와 BW는 엠넷미디어의 최대 주주인 CJ와 글로벌 금융그룹 스탠다드차타드(SC)의 투자 자회사인 SCPE가 참여하며, 제3자 배정 사모방식으로 CJ에는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SCPE는 CB와 BW를 각각 100억원씩 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본건과 관련하여 엠넷미디어와 CJ를 대리하여 CB 및 BW 발행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파이낸셜뉴스 - 엠넷미디어, 300억규모 CB BW 발행
- 헤럴드경제 - 엠넷미디어, 300억원 CB·BW 발행
- 아이뉴스 - 엠넷미디어, 300억 규모 CB·BW 발행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Kent Wong
호주·뉴질랜드 변호사 

(업무동향)

지평지성, 우리투자증권 주관의 한전자회사 KPS의 주식 매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중

한국전력은 한전이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는 한전KPS의 지분중 10%를 매각키로 하고 우리투자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우리투자증권 주관의 한전 KPS의 주식 매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중입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한전KPS 지분10% 내년까지 판다
- 이투데이 - 한전, 한전KPS 지분 10% 내년까지 매각 추진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신민 변호사



(업무동향)

지평지성, 베트남에 최초로 설립된 정유공장의 운영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SK에너지(주)에 법률자문 제공

SK에너지(주)가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PVN)의 자회사인 BSR과 공장운영 및 유지보수(O&M)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SR의 정유공장은 베트남에 설립되는 최초의 정유공장으로 SK에너지는 BSR의 운전 및 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같은 공장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SK에너지와 BSR의 계약과 관련한 자문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한국일보 - SK에너지, 베트남 정유사에 '한 수'
- 헤럴드경제 - SK에너지, 베트남 첫 정유공장에 노하우 전수

[담당 변호사]



양영태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변희경 변호사



한승혁 변호사



Khoa 변호사

is horizon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리걸타임즈 집계, 가장 호감가는 한국 로펌 및 로펌의 브랜드 인지도에서 우수 로펌으로 선정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법률전문잡지인 월간 리걸타임즈가 창간 2주년 기념으로 사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로펌 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호감이 가는 한국 로펌' 중 7위, '로펌의 브랜드 인지도'면에서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합병 1주년을 맞은 지평지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평지성의 120여명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앞으로도 '고객에 대한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합병로펌 지평지성 선호 높아

7위를 차지한 지평지성은 대형 로펌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와 사후 관리에 성의를 다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변호사는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충실하고, 진행상황 전달 등 의뢰인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지평지성이 도전적이고 클라이언트에게 충실하다'는 의견을 보내 온 변호사도 있고, 또 다른 변호사는 '이미지가 스마트하다'고 지평지성을 평가했다.

지평지성은 2008년 5월 당시 법무법인 지평과 지성이 합병을 선언, 그 해 9월 규모 7위의 로펌으로 급부상한 합병로펌이다. 특히 합병 선언 때부터 전문성과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수익성은 물론 윤리성, 공익성, 민주성을 철저히 견지하며 바람직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호사 중엔 지평지성을 선호하는 이유로 '성실과 양심'이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발췌 : 리걸타임즈 2009년 11월호)

[관련기사]

- 리걸타임즈(2009. 11.) - (창간 2주년 특집 설문조사) 한국 로펌 선호도 조사

[도표 1] 가장 호감이 가는 한국 로펌 (출처 : 리걸타임즈, 2009. 11.)

◇ 가장 호감이 가는 한국 로펌

순위	로펌
1	김앤장
2	을촌
3	광장
4	태평양
5	세종
6	화우
7	지평지성
8	중성
9	바른
10	로고스
10	양현

[도표 2] 로펌의 브랜드 인지도 (출처 : 리걸타임즈, 2009. 11.)

◇ 로펌의 브랜드 인지도

순위	로펌
1	김앤장
2	태평양
3	광장
4	세종
5	을촌
6	화우
7	지평지성
8	중성
9	바른
10	로고스

i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 가을 체육대회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10월 24일 전체 변호사·전문가 및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체육대회로, “함께라서 더 좋아, Better Together”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경기진행과 응원전 등을 펼치며 구성원들 간의 단합을 다졌습니다.

[행사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 가을 체육대회. 2009.10.24.)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 가을 체육대회. 2009.10.24.)


is Horizon

이호원 대표변호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강연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지평지성의 이호원 대표변호사는 10월 26일 경북대 법학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초청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로펌이 원하는 변호사 상 - 로펌에서 펼치는 법학도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강연에서 자신이 법조계에 들어온 이후 30년간에 걸친 법조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의 변동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원하는 변호사 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서 당당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법률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강성 대표변호사, LAW 2009 Annual General Meeting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지평지성의 강성 대표변호사가 10월 21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LAW(Lawyers Association Worldwide) 2009년 AGM(Annual General Meeting, 50여개국 150여명 참석)에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홍성준 변호사, 『관리인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외

2009. 10. 20.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관리인제도의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회사파트의 홍성준 변호사가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 선임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홍성준 변호사**)

이번 세미나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도입 당시부터 뜨거운 쟁점이 됐던 회생기업의 '기존 경영진의 법정관리인 선임제도(DIP)'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평지성의 홍성준 변호사는 또 지난 11월 7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전문가 과정에서 '회생절차와 M&A'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과정』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2009. 10. 2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과정에서 저희 지평지성 소송파트의 임성택 변호사가 '경협관련 남한법제개관과 실무가이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 『ITU Telecom World 2009』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

지평지성의 이은우 변호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 Telecom World 2009'에 10월 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참석하였습니다.



ITU Telecom World 전시회는 정보통신 분야 UN 산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가 주최하는 전문 전시회 및 포럼 행사로 이은우 변호사는 현지시각 8일(목)에 'Future of Internet' 세션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is horizon

배성진, 강경국 변호사, 『사법연수원 특수불법행위법』 강좌에서 '제조물책임법' 강의



(좌 : 법무법인 지평지성 배성진 변호사)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경국 변호사)

2009. 10. 26. 지평지성 소송파트의 배성진 변호사가, 11. 2. 회사파트의 강경국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제40기 『특수불법행위법』 강좌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종래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이론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특수한 불법행위들 중에서 '제조물책임'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이론 및 실무의 동향 그리고 일반 불법행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is horizon


이소영 변호사, 『제2회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 참석 및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

2009. 10. 21. 대한병원협회가 서울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2회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이번 포럼은 『효율적인 의료정보화 추진 협력 및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조치·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저희 지평지성 IP·IT팀의 이소영 변호사가 '정통방법의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처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이병래 변호사
brlee@js-horizon.com

□ 학력사항

- 대동고등학교 제12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87학번)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0기 (통합도산법) 수료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 경력사항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역임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통합법 자문 TF 위원 역임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익기금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법무부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9년)
-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에서 LL.M. 과정을 마치고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숨가쁘게 달리기만 하다가 잠시 숨을 돌리고 뒤를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객, 동료들과의 관계를 깊이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학위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지식을 보태어 그간 해왔던 Financing, 증권, M&A 업무 등에 매진하여 고객님들께 필요하고 믿음이 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입인사)



배기완 변호사
gwbae@js-horizon.com

□ 학력사항

- 서울 대원외국어 고등학교 제9회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1학번)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회계학 전공, 04학번)

□ 경력사항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법무법인 지안 변호사
- 현 한국해법학회 회원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합류한 배기완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37기로 수료한 후,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법무법인 지안에서 근무하면서 선박금융을 포함한 금융자문, 기업자문 및 송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입인사)



배동희 공인노무사

dhbae@js-horizon.com

□ 학력사항

- 대구영신고등학교 제32회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89학번)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노동법 전공)

□ 경력사항

- 제13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 조은노무법인
-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 노동부 본부 비정규직대책팀 자문노무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공인노무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근무하게 된 배동희 노무사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89학번) 제13회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노동부 본부 비정규직대책과에서 수습한 후, 2005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조은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컨설팅 및 프로젝트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에서 공인노무사로 재직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농협 등 1190여개 회원조합의 인사, 급여, 노무업무에 대한 자문 및 노동조합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지평지성에서 여러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에서의 현장감과 일반기업에서의 조직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인사 노무관련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충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7,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